

인증품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

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(제55조제1항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을 제출합니다.

인증기관

귀하

사업자	법인(단체)명		생산자 수(작업장 수)				
	대표자 성명		인증번호				
	연락처		제출일				
출 하 내 용	<농축산물 실적>						
	1. 출하기간:						
	2. 인증구분	3. 품목	4. 계획량(kg)	5. 내수/수출	6. 출하처/국가명	7. 출하량(kg)	
	<가공식품·비식용가공품 실적>						
	1. 출하기간:						
	2. 인증구분	3. 제품유형	4. 계획량(kg)	5. 품목(명)	6. 내수/수출	7. 출하처/국가명	8. 출하량(kg)

작성 방법

<농축산물 실적>

1.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. (예시: 1 ~ 12월, 5 ~ 12월, 7 ~ 8월 등)
2. 인증구분은 유기농산물, 유기축산물, 무농약농산물, 취급자 중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3. 품목에는 인증받은 품목(농산물 예시: 사과·배·방울토마토 등, 축산물 예시: 젓소 시유, 육계 식육 등)을 모두 적습니다.
4. 계획량은 인증,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.
5.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,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.
6.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농협유통 등), ②공공급식(학교급식, 군급식 등), ③일반급식(기업체 등), ④전문유통업체(생협 등), ⑤로컬푸드매장, ⑥도매시장, ⑦가공(취급)업체 ⑧직판(온라인, 전화주문 등), ⑨기타(직접 기재)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, 수출인 경우 국가명(예시: 미국, 프랑스, 베트남 등)을 적습니다.
7.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.

<가공식품·비식용가공품 실적>

1.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. (예시: 1 ~ 12월, 5 ~ 12월, 7 ~ 8월 등)
2. 인증구분은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비식용유기가공품, 취급자 중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3. 제품유형에는 식품유형 등을 모두 적되, 가공식품은 식품유형(예시: 장류 또는 70% 이상 장류, 곡류가공품 또는 70% 이상 곡류가공품 등)을, 비식용가공품은 양축용 또는 반려용 또는 70% 이상 반려용 유기사료로 적습니다.
4. 계획량은 인증,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,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.
5. 품목명은 해당 제품명을 각각 적되, 원료·재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이 다양할 경우 한 가지로 취합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.
6.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,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.
7.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농협유통 등), ②공공급식(학교급식, 군급식 등), ③일반급식(기업체 등), ④전문유통업체(생협 등), ⑤로컬푸드매장, ⑥도매시장, ⑦가공(취급)업체, ⑧직판(온라인, 전화주문 등), ⑨동물병원, ⑩기타(직접 기재)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, 수출인 경우 국가명(예시: 미국, 프랑스, 베트남 등)을 적습니다.
8.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.

※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.